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57
- 나. 제 안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안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2. 제안사유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노동취약계층과 플랫폼 노동자 정의 추가(안 제2조)
- 나. 노동권익 보호 증진 사업 추가(안 제10조)
- 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신설(안 제11조)
- 라. 불필요한 규정 삭제(제21조)

4. 관계법령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77조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 전통적 고용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고용의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으로 인해 노동관계 법률을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므로 마포구는 노동법 보완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고병준 의원 대표발의/제262회 제1차 정례회(2023.3.31.))하고 이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음식배달 플랫폼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마포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2번째로 음식점 수가 많음(서울특별시 상권분석 서비스 참고)
 - 마포구는 음식점 숫자 대비 주문 건수도 많아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일거리가 타 지역보다 많아 마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마포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마포구 플랫폼 노동자 현황]¹⁾

- 서울지역 플랫폼 종사자 215만명, 25자치구 기준 구별 약 9천명, 이들 중 64%가 배달, 배송, 운전 직종, 마포구에 약 6,400명 정도 근무 예상
- 마포구 이륜차 등록 현황 14,200대

1) 출처 : 일자리청년과 제공(2022년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자료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최근 플랫폼종사자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사점」 참고하여 규모 추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회피, 적용 제외 신청 제도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함.
- 이에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 보장제도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 기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노동취약계층과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추가하였음.
 - “노동취약 계층”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취약노동자로 정의하였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위촉계약 등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13개 직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한 9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관련 근거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개인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 안 제10조는 노동권익 보호 증진 사업에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을 추가하였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회피, 적용 제외 신청 제도²⁾ 등으로 산재보험 대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을 신규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노동자로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한 자로 명시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나, 조례상 근거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보장할 책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의 대상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과 분류가 법·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실제 종사자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수요가 초기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예산 조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임.

붙임 1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

비대면 서비스 발달로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대상: 마포구 거주 또는 관내 업체 근무 플랫폼 배달 노동자 1,000명
- 사업내용: 산재보험료 최대 10만원(500명), 5만원 상당 안전 물품(500명) 지원

□ 세부추진계획

-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지원대상: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로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 한 자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5개월 지원(월 2만원, 인당 10만원 한도)
 - 안전물품: 여름, 겨울 각각 250명씩 5만원 상당 안전 물품 지원
- 플랫폼 배달 노동자 대상 안전물품 수요조사 실시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플랫폼 배달 노동자 의견수렴
- 구정 홍보 매체 및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활용하여 사업 홍보
- 사업 종료 후 수혜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수혜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성별, 연령 등 분석

□ 소요예산: 76,500천원(구비)

- 산재보험료 50,000천원, 안전 물품 25,000천원, 홍보비 등 1,500천원

□ 기대효과

- 부상의 위험이 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와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